의안번호	2213341
의 뢰 인	정희용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5.
추계번호	25E536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―조합 출자금 비과세 및 예탁금 저율과세 적용기한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조합 출자금 비과세,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등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30년 말로 5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3,814억원 등 2026~2031년 6년간 총 3조 4,329억원(연평균 5,72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조합 출자금 비과세 연장 (안 제88조의5)	−219	−394	−394	−394	−394	−175	−1,970	−328
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연장 (안 제89조의3)	−3,595	−6,472	−6,472	−6,472	−6,472	−2,876	−32,358	−5,393
합계	−3,814	−6,866	−6,866	−6,866	−6,866	−3,051	−34,329	−5,721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8조의5 (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)	○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– (현행)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신협·새마을금고 조합원·회원 및 준조합원의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과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비과세(2026년부터 저율과세*) * 2026년 5%, 2027년 이후 9% – (개정안) 2030년 12월 31일까지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신협·새마을금고 조합원·회원 및 준조합원의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과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비과세(2031년부터 저율과세*) * 2031년 5%, 2032년 이후 9%	–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2	안 제89조의3 (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)	○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기한 연장 – (현행)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신협·새마을금고 조합원·회원 및 준조합원의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(2026년부터 저율과세*) * 2026년 5%, 2027년 이후 9% – (개정안) 2030년 12월 31일까지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신협·새마을금고 조합원·회원 및 준조합원의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(2031년부터 저율과세*) * 2031년 5%, 2032년 이후 9%	–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88조의5 (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)	○	–
2	안 제89조의3 (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)	○	–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가. 조합 출자금 비과세 연장

❑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여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

❑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실적규모를 바탕으로 하여 2026년부터 2031년까지의 세수효과 추계

○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(2025년)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
○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 및 저율과세 적용기간 변화로 인해 현행 대비 적용세율의 변화가 발생하는 기간(2026~2031년)에 대하여 세수효과 추계

나.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연장

❑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여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

❑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일몰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실적규모를 바탕으로 하여 2026년부터 2031년까지의 세수효과 추계

○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(2025년)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
○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 및 저율과세 적용기간 변화로 인해 현행 대비 적용세율의 변화가 발생하는 기간(2026~2031년)에 대하여 세수효과 추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조합 출자금 비과세 연장

1) 조세지출 실적

❑ 조합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은 2025년 613억원 등 최근 5년간 증감추세 반복

[표 2]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: 2021~2025년

(단위: 억원, %)

	2021	2022	2023	2024	2025[1)]
조세감면액	491	611	868	594	613
(증감률)	(△0.2)	(24.4)	(42.1)	(△31.6)	(3.2)

주: 1) 상반기 실적 기반 전망치
자료: 기획재정부, 각 연도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2) 추계 방법

❑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에 따른 향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(2025년)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,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
○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실적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변동적이므로

일몰연장 세수효과는 최근(2025년) 수준(613억원)을 기준으로 함

- 2025년 전망치에 2025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반영

○ 현재 조세지출 실적은 배당소득세율 14% 수준을 기준으로 하므로,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
- 일몰연장으로 인한 세율 변동폭은 2026년 5%p, 2027~2030년 9%p, 2031년 4%p이며, 동 차이 만큼 세수효과 발생
- 개정안에 따르면 2026~2030년은 비과세이므로 세율 0%, 2031년은 5%, 2032년 이후는 9% 적용

[표 3]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연도별 배당소득세 세율

(단위: %, %p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
현행(A)	5	9	9	9	9	9	9
개정안(B)	0	0	0	0	0	5	9
소득세율 변동폭(B-A)	△5	△9	△9	△9	△9	△4	0

○ 2025년 배당소득세율이 14% 수준일 때 조세지출액이 613억원이므로,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으로 환산하면 44억원(=613억원/14%p)으로 볼 수 있음

- 소득세법 제129조(원천징수세율)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해 100분의 14 세율 적용

○ 따라서 상기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액에 각 연도별 세율 차이를 곱하여 세수효과 추정

3) 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30년말로 5년 연장할 경우, 재정수입 감소는 2026~2031년 6년간 총 1,970억원(연평균 328억원)으로 예상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조합 출자금 비과세 연장 (안 제88조의5)	-219	-394	-394	-394	-394	-175	-1,970	-328

나.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연장

1) 조세지출 실적

❑ 조합 등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은 2025년 1조 67억원 등 최근 5년간 증가 추세(2022~2025년 연평균 47.9%↑)

[표 5]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[1)]	연평균[2)]
조세감면액	3,269	3,113	6,226	9,765	10,067	
(증감률)	(△25.2)	(△4.8)	(100.0)	(56.8)	(3.1)	(47.9)

주: 1) 상반기 실적 기반 전망치
2) 2022~2025년 연평균
자료: 기획재정부, 각 연도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2) 추계 방법

❑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과세에 따른 향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(2025년)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,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
○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실적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변동적이므로 일몰연장 세수효과는 최근(2025년) 수준(1조 67억원)을 기준으로 함

- 2025년 전망치에 2025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반영

○ 현재 조세지출 실적은 이자소득세율 14% 수준을 기준으로 하므로,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
- 일몰연장으로 인한 세율 변동폭은 2026년 5%p, 2027~2030년 9%p, 2031년 4%p이며, 동 차이 만큼 세수효과 발생
- 개정안에 따르면 2026~2030년은 비과세이므로 세율 0%, 2031년은 5%, 2032년 이후는 9% 적용

[표 6]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연도별 이자소득세 세율

(단위: %, %p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
현행(A)	5	9	9	9	9	9	9
개정안(B)	0	0	0	0	0	5	9
소득세율 변동폭(B-A)	△5	△9	△9	△9	△9	△4	0

○ 2025년 이자소득세율이 14% 수준일 때 조세지출액이 1조67억원이므로,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으로 환산하면 719억원(=1조67억원/14%p)으로 볼 수 있음

- 소득세법 제129조(원천징수세율)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해 100분의 14 세율 적용

○ 따라서 상기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액에 각 연도별 세율 차이를 곱하여 세수효과 추정

3) 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일몰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30년말로 5년 연장할 경우, 재정수입 감소는 2026~2031년 6년간 총 3조 2,358억원(연평균 5,393억원)으로 예상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연장 (안 제89조의3)	−3,595	−6,472	−6,472	−6,472	−6,472	−2,876	−32,358	−5,393

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성은	박연서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성은	02-6788-4668	ixsepark@assembly.go.kr